

2. 생활물류전문위원회: 제4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)의 위원

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. [<개정 2025. 10. 1.>](#)

1. 녹색물류전문위원회: 다음 각 목의 사람

가.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

나.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1)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, 에너지 또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

2) 물류,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, 에너지 또는 자동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

2. 생활물류전문위원회: 다음 각 목의 사람

가.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

나.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1) 고용노동부, 공정거래위원회 및 우정사업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

2)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⑥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.

⑦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해임 및 해촉,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4. 7. 2.]

**제14조(수당 등)** 위원회,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<개정 2024. 7. 2.>](#)

**제15조(운영세칙)** ①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[<개정 2024. 7. 2.>](#)

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 [<신설 2024. 7. 2.>](#)

**제16조(지역물류정책위원회)**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 · 도지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1. 관할 및 인접 시 · 군 · 구의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2. 해당 시 · 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

3.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,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회의, 간사 및 수당 · 여비에 관하여는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,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. [<개정 2024. 7. 2.>](#)

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· 도의 조례로 정한다.